

차세대콘텐츠연구소 운영규정

제정 2012.03.01.

개정 2017.06.01.

제1조(적용대상) 본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게임콘텐츠스쿨 내 설치된 차세대 콘텐츠연구소에 대해 적용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본 연구소와 유관한 외부 수탁 과제 수행
2. 본 연구소와 관련되는 제문제의 조사연구
3. 연구발표회, 자료수집, 연구업적(논문 및 단행본) 발행 및 본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도서 간행
4. 국내외 타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
5.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 추진

제4조(조직)

1. 본 연구소는 본교 교직원 중 총장이 임명한 연구소장 및 연구위원, 연구원 및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각 직제는 겸직가능하다.
2. 본 연구소는 산학협력단 산하 행정조직으로 구분되며 산학협력단 정관 제8조 7항에 의거하여 게임콘텐츠스쿨 원장이 운영한다.

제5조(연구계약 승인 및 보고)

1. 연구소장은 외부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외부기관의 위촉에 의하여 연구, 기술지도 및 자문에 응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게임콘텐츠스쿨 원장에 보고하며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다.
2. 연구소장은 5조 1항의 계약 체결 후 연구목적, 기간, 내용, 연구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 게임콘텐츠스쿨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3. 전항의 경우 외부연구비는 본교 연구비중앙관리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본교 산학협력단 회계로 편입하여 관리하며 사업비 집행 시 적정자료를 첨부하여 사업비지급을 청구한다.

제6조(평가) 본 연구소의 운영실적은 다음사항에 준하여 심사된다.

1. 연구실적(연구과제수, 연구비 수혜액)
2. 연구활동(논문집, 저서, 학술대회, 세미나 등)
3. 발전전망(사업계획, 기금확보 계획 등)

4.연구능력

5.기타 연구소 평가에 필요한 사항

부 칙

제1조(개정 및 수정) 본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개정 및 수정할 수 있다.

제2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